

형사소송법

- 문 1. 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- 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, 소송경제,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과 같은 공공의 이익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다.
 - ②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, 항거 등을 억제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하는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.
 - ③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법원이 형사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, 신속한 재판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.
 - ④ 구속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부당한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미결구금기간 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.
 -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 부단체장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「지방자치법」 규정은 자치단체장이 구금상태에 있고 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이 있지만 하면 유죄판결이나 그 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한 채 바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.
- 문 2. 형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- ①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 이외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그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,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할 수 있다.
 - ② 친고죄에서 공범의 일인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와 검사의 공소제기의 효력은 각각 다른 공범에게도 미친다.
 - ③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자백을 한 경우에는 그에게 유죄가 인정되므로 법원은 사실인정절차를 종결하고 양형절차만 거쳐 형을 선고하면 된다.
 - ④ 범죄가 유죄임이 밝혀지고 소송조건이 갖추어지면 검사는 예외 없이 법률에 따라 기소를 하여야 한다.
 - ⑤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에 대하여 그 작성자인 변호사가 그 진정성립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「형사소송법」 제314조의 ‘진술을 요하는 자가 진술할 수 없는 때’에 해당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.

문 3.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.
- ②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.
- ③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병합관할하지만,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.
- ④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해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, 항소심 법원은 관할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.
- ⑤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는 소송법상 토지관할 분배가 아니라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의 분배이다.

문 4. 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후 헌법재판소가 사건적용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개정시한을 정하여 입법개선을 촉구하였는데도 그 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,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.
- ② 피고인이 공소기각의 판결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여 상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.
- ③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.
- ④ 「부정수표 단속법」 위반 사건에 있어서 수표가 그 제시기일에 제시되지 아니한 사실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해 명백하여 공소사실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.
- ⑤ 동일인 한도초과 대출로 상호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하여 「상호저축은행법」 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경우,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.

문 5. 수사기관의 압수·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ㄱ. 소유자,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.
- ㄴ. 압수·수색영장에 의해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도 전체적으로 압수·수색영장 집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.
- ㄷ.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·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,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·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라면 그 별도의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·수색을 할 수 있다.
- ㄹ. 압수·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.

- ① $\neg$, $\sqsubset$
 ② $\sqcup$, $\sqsubset$
 ③ $\neg$, $\sqcup$, $\sqsubset$
 ④ $\sqcup$, $\sqsubset$, $\sqsubset$
 ⑤ $\neg$, $\sqcup$, $\sqsubset$, $\sqsubset$

문 6.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ㄱ.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법원은 그 부분을 피고인과 변호인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 중 어느 한 쪽에 대해서만 송달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다.
- ㄴ. 법원은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.
- ㄷ.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사실의 일부만 진술하고 나머지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저장한 저장매체를 제출하였다면, 공소사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부분에 한하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.
- ㄹ. 설령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심리를 하였더라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결국 무죄를 선고하였을 것이 분명할 경우,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한 위법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.

- ① ㄱ, ㅈ
② ㄴ, ㄷ
③ ㄱ, ㄴ, ㄷ
④ ㄴ, ㅈ, ㄷ
⑤ ㄱ, ㄴ, ㅈ, ㄷ

문 7.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.
- ②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된다.
- ③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·변호인·청구인은 법원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, 필요한 경우에는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④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법원은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.
- ⑤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, 그 변호인, 법정대리인,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매나 가족,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다.

문 8.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검사,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하여야 하고, 다만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.
- ②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.
- ③ 법원의 증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령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.
- ④ 녹음·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·녹화매체 등을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한다.
- ⑤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,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한다.

문 9.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없다.
- ② 국제항공특송화물로 필로폰이 밀수입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수사기관이, 그 필로폰을 감시 하에 배송함으로써 거래자를 밝혀 검거하는 수사기법을 실행하기 위하여, 세관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그로 하여금 해당 특송화물을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져오게 한 후 개봉하여 그 속의 필로폰을 취득하는 경우, 수사기관은 사전 또는 사후의 압수·수색영장을 받지 않아도 된다.
- ③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승인 건의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한 후 검사가 긴급체포의 적법성 여부 심사 등을 목적으로 피의자를 대면조사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인치를 명한 경우,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.
-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사람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된 경우,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현행범인이 체포된 때이다.
- ⑤ 수사기관이 甲으로부터 피고인의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위반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, 구속수감되어 있던 甲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甲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그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, 그 녹음 자체와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는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상관없이 증거능력이 없다.

문 10. 보석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(○)과 옳지 않은 것(×)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ㄱ. 법원은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고인의 보석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.
- ㄴ.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는 경우 보증금의 몰수는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석취소 후 별도로 몰수결정을 할 수 있다.
- ㄷ.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.
- ㄹ.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 하여야 한다.

	ㄱ	ㄴ	ㄷ	ㄹ
①	×	○	○	×
②	×	○	○	○
③	×	○	×	○
④	○	×	○	×
⑤	○	○	×	×

문 11. 형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법원은 당사자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채택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.
- ②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,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.
- ③ 법정에 제출된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다.
- ④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한다.
- ⑤ 법원은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증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.

문 12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검사가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.
- ② 친고죄에 관하여 고소가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더라도, 그 수사가 장차 고소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, 고소가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.
- ③ 변호인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른 변론행위라는 명목으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적극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것은 허용된다.
- ④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그와 동일한 범죄사실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⑤ 법원이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그 장애의 정도를 비롯하여 연령·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.

문 13.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압수·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당해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도 임의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.
- ② 허가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가 전기통신의 감청인 경우,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신제한 조치의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이 「통신비밀보호법」이 정한 감청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집행함으로써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.
- ③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「형사소송법」 제312조제2항에 규정된 ‘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’에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의 증언은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
- ④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.
- ⑤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‘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’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.

문 14. 압수·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.
- ②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「통신비밀보호법」상의 감청에 포함되지 않는다.
- ③ 검사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공소제기 전이라도 이를 환부하여야 하지만,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환부의무가 면제된다.
- ④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, 소지자,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할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, 압수목록은 원칙적으로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.
- ⑤ 수사기관이 압수·수색영장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을 받는 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나,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·수색을 할 수 있다.

문 15. 형사절차상 불복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.
- ②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할 수 없다.
- ③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.
- ④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- ⑤ 재심개시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
문 18.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국외체류자의 공소시효의 정지사유인 ‘형사처분을 면할 목적’은 그것이 국외체류의 유일한 목적일 필요는 없이 포괄적 목적이면 족하므로,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인정된다.
- ② 「형사소송법」이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므로, 증거판단에 있어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을 할 때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.
- ③ 포괄일죄인 영업범에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전체에 미치므로, 공판심리 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.
- ④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정액의 인정 등 몰수·추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.
- ⑤ 피고인이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, 제1심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의 이수명령을 병과한 경우, 이는 전체적·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.

문 19.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 후 진행된 정식재판의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, 재심청구권자가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한 때에는 그 약식명령이 재심판결의 심판대상이 된다.
- ②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- ③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, 이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.
- ④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「헌법재판소법」 제47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종전의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, 그 합헌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더라도, 범죄행위가 그 이전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.
- ⑤ 재심청구는 결정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, 재항고기각 결정은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.

문 20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(○)과 옳지 않은 것(×)을 바르게 조합한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ㄱ.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그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 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더라도 「형사소송법」 제315조제3호의 ‘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’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.
- ㄴ. 수사기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모두 위법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.
- ㄷ.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추가로 음주 측정을 할 필요가 있어 운전자로부터 혈액측정에 대한 자발적인 동의를 받아 채혈하여 획득한 혈액과 이를 기초로 한 혈중알코올 감정서는 증거능력이 없다.
- ㄹ. 「형사소송법」 제310조 소정의 ‘피고인의 자백’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 간에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.
- ㅁ.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피의자의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은 부정된다.

	ㄱ	ㄴ	ㄷ	ㄹ	ㅁ
①	○	×	○	×	○
②	○	×	×	○	○
③	○	○	×	×	○
④	×	○	○	○	×
⑤	×	○	×	○	×

문 21. 소송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검사가 서면인 공소장의 제출 없이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에 요구되는 소송법상의 정형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 소송행위로서의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.
- ② 피고인이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였음에도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지만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.
- ③ 시효와 구속의 기간에 관하여서는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더라도 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.
- ④ 소송서류를 우체에 부친 경우에는 도달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.
- 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어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는 것이며, 그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.

문 22.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 법원은 당해 조서 중 어느 부분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.
- ② 조서 작성의 절차 및 방식의 적법성과는 별도로 그 진술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검사 앞에서 진술한 것과 동일하게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.
- ③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술이 ‘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’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하고, 이에 대한 검사의 입증은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.
- ④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한 후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 그 진정성립에 대한 번복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이미 인정된 조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.
- ⑤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명시적인 진술에 의하여야 하고, 단지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.

문 23. 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무죄, 면소, 형의 면제, 형의 선고유예, 형의 집행유예, 공소기각 또는 벌금이나 과료를 과하는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.
- ② 「도로교통법」상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그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범칙금의 납부에는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.
- ③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.
- ④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되지만, 환송 뒤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- ⑤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,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데, 이를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.

문 24.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(이하 ‘서류 등’이라 한다)의 증거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서류 등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한 서류 등의 열람·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.
- ② 검찰청이 보관하고 있는 불기소처분기록에 포함된 불기소결정서는 그 작성의 목적이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또는 검토과정에 있는 문서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인의 열람·지정에 의한 공개의 대상이 된다.
- ③ 검사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.
- ④ 검사가 증거개시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.
- ⑤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·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·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.

문 25. 증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검사가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주신문을 하면서 형사소송규칙상 허용되지 않는 유도신문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었고 그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각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‘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’고 진술한 경우, 유도신문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신문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.
- ②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.
- ③ 증인신문은 공판기일에 공판정에서 행하여야 하므로 법원이 증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.
- ④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신문절차에서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었는데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.
- ⑤ 선서 무능력자에 대하여 선서하게 하고 신문한 경우에 그 선서와 증언은 무효가 된다.